

글로벌 이슈 리포트 / Global Issue Report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기되는 국외 저작권 관련 이슈 및 입법례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②싱가포르

구태언, 최현윤 | 법무법인 린 변호사

III.싱가포르의 저작권법과 디지털트윈

1. 저작물성

(1) 싱가포르 저작권 체계

(2) 저작물 요건

(3) 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4) 저작권의 존속기간

2. 저작권침해 판단 및 제한법리

(1) 침해 양태

(2) 제한법리

1) 일반규정

2) 아마추어적 인식의 항변

3) 저작권과 등록 디자인권에 의한 중복 보호 여부

가. 산업디자인의 예외

나. 산업상 이용된 미술작품의 예외

4) 저작인격권

3. 소 결

IV.시 사 점

III. 싱가포르의 저작권법과 디지털트윈¹⁾

1. 저작물성

(1) 싱가포르 저작권 체계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 등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모두 저작권의 범주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제9장의 제188조 이하에서 '저작자 성명표시 위반 금지' 조항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2) 저작물 요건

1) 서 설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저작권법에 규정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작품 카테고리에 해당할 것(언어작품(literary works), 연극작품(dramatic works), 음악작품(musical works), 미술작품(artistic works)의 4가지) ②싱가포르와 연결 요소가 있을 것 ③창작성 : (a)저작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작성된 것, (b)최소한의 창조성(creativity) ④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제7조). 아래에서 별도의 항을 나누어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2) 연결요소 요건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 의한 작품과 싱가포르 간에 연결요소(connecting factors)가 필요한데, 작품이 미발행인 경우와 발행이 끝난 경우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제27조 참고)

① 미발행시

저작자가 창작시에 「적격자」(qualified person), 즉, 싱가포르 국민이나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에는 연결 요소가 인정된다. 또한, 조약 가맹국의 국민, 거주자여도 「적격자」라고 인정된다.

② 발행이 완료된 경우

저작자가 발행시 또는 사망시 시점 중 빠른 시점에서 「적격자」인 경우에 연결 요소가 인정된다.

1) 싱가포르 저작권법 원문은 <https://sso.agc.gov.sg/> 참고, 2021.1.2 시행법 기준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작품이 발행된 경우에도 연결 요소가 인정된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작품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약 가맹국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연결 요소가 인정된다.

3) 고정성 요건

싱가포르 저작권법 체계하에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이 서면 그 외의 유형 매체에 고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즉흥적으로 행해진 재즈 세션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으며, 실연되는 발레를 영상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실제 사건에서 유형 매체에 고정되어 있는가는 입증 용이성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에 규정된 미술작품은 (a)작품 예술성을 불문하고 회화, 조각, 선화, 판화, 사진, (b)건축물 또는 모형의 예술성을 불문하고 건축물 모형, (c) (a) 및 (b)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미술 공예품이 있다.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i)유형적인 작품의 복제, (ii)작품이 미발행인 경우의 발행, (iii) 공중에 대한 작품 전달을 위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제26조 제1항(b)). 한국의 공표권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의 지분권의 하나로서 '발행권'에 포함되어 있다. 전시권에 대응하는 지분권은 싱가포르에 없으며, 원작품의 소유자는 옥외 상시 설치도 가능하다.

(4) 저작권의 존속기간

싱가포르의 경우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물 유형	존속기간
문예작품, 연극작품, 음악작품, 미술작품	저작권자의 생존기간 내 및 사후 70년간, 다만, 사진 및 저작자의 사망 후 처음으로 공표된 경우에는 처음 공표된 시점에서 70년간
상기 각 작품의 출판품	출판된 시점부터 25년간
녹음, 영상 필름	처음 공표된 시점에서 75년간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제작시점부터 50년간
연극	공연시점부터 70년간

2. 저작권 침해 판단 및 제한 법리

(1) 침해양태

1) 서설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유형을 1)1차 침해(primary infringement) 2)허락에 의한 1차 침해(authorizing primary infringement) 3)2차 침해(secondary infringement)의 3가지로 나누고 있다(제31조, 제9조).

2) 허락에 의한 1차 침해

허락에 의한 1차 침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

①허락자가 저작권 침해의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해당 침해를 예방할 권한을 있었는가
②허락자와 실제 침해자와의 관계성
③허락자가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를 취했는가
④허락자가 저작권 침해의 발생 또는 그 우려의 현실 인식 또는 의제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등이다.

3) 2차 침해

2차 침해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물품인 줄 알면서도 그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1차침해와 달리 2차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²⁾

4) 간접침해

전술한 직접 침해의 유형이 아닌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복제의 주체를 놓고 Record TV v MediaCorp TV Singapore 판결³⁾은 복제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이다. Record TV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 사용자가 무료 방송의 비디오 녹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Media Corp는 녹화된 방송의 저작권을 보유하는 방송국이다. 녹화는 Record TV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건의 쟁점 중 하나는 복제의 주체가 Record TV인지 등록 사용자인지였는데, 항소법원은 자신의 의사에 의한 행위

2)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32조, 제33조

3) 출처 : <https://v1.lawgazette.com.sg/2010-12/feature1.htm> 참고

(volitional acts)를 하는 자가 복제의 주체라는 전제에서 '특정 TV 프로그램의 녹화를 지시하는 등록 사용자가 복제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2) 제한법리

1) 일반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페어딜링'이라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도 가지고 있다(제109조~제111조). 즉, '본 조의 조건 하에서 36조, 37조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의 언어작품, 연극작품, 음악작품이나 미술작품의 페어딜링 또는 언어작품, 연극작품, 음악작품 또는 미술작품의 번안을 수반하는 페어딜링은 저작권 침해로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일반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이용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a)이용 목적 및 성격(상업성을 가지거나 비영리적 교육 목적을 포함), (b)작품 또는 번안물의 성질, (c)작품 또는 번안물 전체와 관련성이 있는 복제된 부분의 양 및 실질성, (d)작품 또는 번안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이용의 영향, (e)통상의 상업가격으로 타당한 시간 내에 작품 또는 번안물에 대한 입수가능성을 고려한다.

2) 아마추어적 인식의 항변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는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63조 이하) 이하에서 싱가포르법의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69조에서는 이른바, '아마추어적 인식의 항변'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물품이 해당 물품의 전문가가 아닌 자가 볼 때 미술작품의 복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 (a) 3차원에 의한 물품의 제작은 2차원 미술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b) 2차원 물품의 제작은 3차원 미술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평면적인 작품을 입체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제15조 (3)에 의하여 '복제'의 개념에는 포섭되지만, 제69조에 의하여 건축도면을 바탕으로 완성된 건축물을 인식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디지털 트윈 공간내에서 2D의 데이터를 3D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69조에 의한 저작권 제한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production of work in different dimensions

69.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

(a) the making of an object of any kind that is in 3 dimensions does not infringe the copyright in an artistic work that is in 2 dimensions; and

(b) the making of an object of any kind that is in 2 dimensions does not infringe the copyright in an artistic work that is in 3 dimensions, if the object would not appear to persons who are not experts in relation to objects of that kind to be a reproduction of the artistic work.

3) 저작권과 등록 디자인권에 의한 중복 보호 여부

싱가포르는 저작권과 등록 디자인권의 중복 보호를 최소화하려는 특유의 법제를 채용하고 있는 바, 관련하여 제74조와 제70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산업디자인의 예외

제74조는 디자인등록 가능한 물품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대응 디자인'(corresponding design⁴⁾) '산업상 이용'(applied industrially)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74조 (1) (a)는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등록디자인권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3)는 「산업상 이용」 즉,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이용되었을 경우(저작권 규칙 제12조), 물품의 판매시 또는 대여시로부터 15년간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15년이 경과 후에는 일체의 관련 디자인 및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74. —(1) Where copyright subsists in an artistic work and a corresponding design is registered or deemed registered under the Registered Designs Act (Cap. 266), it shall not b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

(a) to do anything, during the subsistence of the copyright in the registered design, which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in the design; or

...

74. (3) Subject to subsection (5) —

(a) during the relevant period of 15 years, it shall not b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to do anything which, at the time when it is done, would

4) 제73조 (1)에서 「물품에 이용되었을 때에 해당 작품을 복제하는 결과가 되는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응디자인에 대하여는 개별법으로서 대응디자인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have been with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in the design if the design had, immediately before that time, been registered in respect of all relevant articles and non-physical products; and
 (b) after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of 15 years, it shall not b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to do anything which, at the time when it is done, would, if the design had been registered immediately before that time, have been with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in the design as extended to all associated designs, articles and non-physical products.

상기와 같은 싱가포르법 체계의 특성상,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응용미술품을 AR 기술 등을 통하여 디지털트윈 공간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저작권법보다 등록디자인권 침해 문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산업상 이용된 미술작품의 예외

제70조 (1)은 제74조와 달리 미술작품이 회화, 조각처럼 오로지 순수미술적 성격을 갖는 등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제70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목해야 할 개념은 '실용품'(useful article, 단순히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전하는 것 이외에 본래적으로 실용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⁵⁾), '산업상 이용'(applied industrially⁶⁾), '3차원의 복제'(reproductions in 3 dimensions)이다.

제70조 (1)은 '제69조에 관계없이 실용품의 제작(해당 물품의 제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2차원의 복제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실용품의 제작 또는 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술작품이 싱가포르 또는 기타 국가에서 산업상 이용되고 있는 때에는 일체의 3차원 실용품 제작은 해당 미술작품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70. —(1) Despite section 69, the making of any useful article in 3 dimensions (including a reproduction in 2 dimensions reasonably required for the making of the article), or of any non-physical product, does not infringe the copyright in an artistic work if, when the useful article, reproduction or non-physical product is made, the artistic work has been applied industrially in Singapore or in any other country at any time before the useful article, reproduction or non-physical product is made.

제70조(2)는 '산업상 이용'에 대해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50을 초과하는 3차원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제70조는 미술작품이 실용품에 3차원적으로 이용될 때 적용되고 평면적인 물품에 2차원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5) 제70조(4) 정의 참조

6) 제74조의 정의와는 다르다

70.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n artistic work is applied industrially if —

- (a) more than 50 reproductions in 3 dimensions are made of it, for the purposes of sale or hire;
- (b) it is reproduced in 3 dimensions in one or more articles manufactured in lengths, for the purposes of sale or hire; or
- (c) it is reproduced as a plate which has been used to produce —
 - (i) more than 50 reproductions of an object in 3 dimensions for the purposes of sale or hire; or
 - (ii) one or more articles in 3 dimensions manufactured in lengths for the purposes of sale or hire.

(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2 or more reproductions in 3 dimensions which are of the same general character and intended for use together are a single reproduction.

(4) In this section, “useful article” means an article having an intrinsic utilitarian function that is not merely to portray the appearance of the article or to convey information.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 article that is normally part of a useful article is considered a useful article.

다. 등록디자인권의 보호와 침해 판단

싱가포르 법체계하에서는 등록디자인에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 간략히 등록디자인법하에서 권리 보호와 침해 판단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등록요건

싱가포르 등록디자인법 제 5조 (1)은 "신규성 있는 디자인은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출원에 의하여 그 출원에 있어 명기되는 물품에 관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①디자인이 등록디자인법에서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디자인'일 것 ②디자인이 '신규성'을 가질 것 ③출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일 것 ④디자인이 '물품'에 적용될 것 등 4가지 요건으로 나뉜다.

● 침해판단

디자인의 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자에게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것이나 거래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제조하거나 싱가포르에 수입하는 행위, 싱가포르에서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권자가 배타적 권리를 갖는 행위를 등록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하는 행위, 싱가포르 또는 그 밖의 국가에서 등록디자인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제조하는 행위는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있는지는 다음의 2 단계의 접근방식으로 판단된다.

우선, 신규성에 관한 기재, 관련된 선행 디자인, 기능성의 제외 등에서 등록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등록디자인과 침해라고 주장되고 있는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후자가 1단계 결과, 등록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디자인의 특징을 모두 도입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비교는 디자인을 옆에 두고 이루어지는 대비적 관찰(side by side comparison) 뿐만 아니라 시기와 장소를 달리한 이격적 관찰(imperfect recollection)로도 이뤄져야 한다⁷⁾.

4) 저작인격권

싱가포르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불행사 또는 포기의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⁸⁾.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i) 제3자에 의한 작품의 허위 귀속을 막을 권리(제188조), (ii) 개변된 작품을 개변되지 않은 작품으로 잘못 표명되지 않을 권리(제189조), (iii) 미술 작품의 복제의 저작자로서 잘못 귀속되지 않을 권리(제190조)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 귀속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에 해당한다. 다만, 상기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저작자명을 표시할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물에 저작자명이 표시되도록 계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공표권은 싱가포르에서는 저작권(발행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저작권법에서는 동일성 유지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복제권, 번안권의 범위 외가 되는 작품의 수정 등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호의 변경의 경우 한국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한국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보호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특히, 저작물을 기반으로 작성된 포인트 클라우드 등 공간정보가 사용자 단말 등에 표시되는 경우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법률 이외에 당사자간 계약에

7) Hunter Manufacturing Pte Ltd v Soundtex Switchgear & Engineering Pte Ltd [1999] 3 SLR (R) 1108 at [69], Sebel Furniture Ltd v Tiong Hin Engineering Pte Ltd [1998] 3 SLR (R) 690 at [25] 판결 등 참조

8) 제192조 이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부분 참고

의하여 권리의 포기나 행사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실무상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소결

싱가포르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디자인등록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유한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판단에서 작품이 서면 그 외의 유형 매체에 고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저작권 제한법리에서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법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으로서 페어딜링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불행사나 포기의 합의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제에서는 현실 환경을 디지털트윈 공간 내의 공간정보로 작성 및 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이 등록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및 저작권자와의 이용 계약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트윈의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중 특히 포인트 클라우드를 예시로 하여 일본과 싱가포르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개괄적이거나 검토하였다. 그러나, 공간정보는 지도나 지적도, 항공영상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전술한 공간정보를 가상세계에 어떠한 형태로 재현하느냐 또는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서 표현하느냐 등에 따라서 개별 구체적으로 창작성 내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 미술품 등의 저작물을 메타버스 특히 디지털트윈 환경 내에서 재현하면서 발생하는 다수의 저작권 쟁점들은 현행 저작권법의 내용 및 관련 판례를 적용하여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현실세계에서는 소수의 창작자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 앞으로의 디지털 트윈 환경 내에서는 다수의 창작자 등이 동시에 상호 작용하면서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제까지의 저작권법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결국, 공간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만 아니라 이를 AR이나 VR 등의 기술로 게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행위 양태를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저작권제도의 기본적 법리들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